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소방교육대 모듈러 생활관 제작·설치

나. 사 업 비 : 9,494,750천원정도(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10개월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4항에 따라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이 필요함.